

1. 개정이유

‘토양오염도’ 조사 재대행업무 삭제, 재대행 승인 강화, 거짓·부실 판단 기준 개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제외함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에 ‘업무 여유도’ 추가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개선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

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

- 2)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기초자료의 부실 작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에 현행 환경영향평가서등 뿐 아니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추가
- 3) 거짓·부실 작성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3~6개월)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자료 미보존 시 처분기준 강화(경고 → 업무정지 3개월)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짓 작성의 경우는 인정정지 12개월, 부실 작성의 경우 인정정지 6개월로 차등 처분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오염도”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업무 여유도

별표 2 제1호가목1)과 2)의 외의 부분 중 “사실과”를 “다음과 같이 사실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 등 국가기관”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대기질, 수질 등 국가기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차목의 경우 3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제1호 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

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재대행 승인 받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이 거짓·부실일 경우에 작성 및 조사 주체 등 책임 소재 및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1) 업무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 2)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별표 3 제2호마목2)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별표 3의2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7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 정지 12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인정 취소	
2)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별표 4 제2호 근거법조항란 중 “법 제65조제1항제4호”를 “법 제65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근거법조항란 중 “법 제65조제1항제5호”를 “법 제65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지 11호의2 서식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업무 여유도

별지 13호서식 앞쪽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약 현황			
발주자(기관)		전화번호	
계약자	주 계약자 :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	)	
	공동계약자 :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	)	
	재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 :	재대행금액	백만원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	재대행계약기간	
	재대행자(측정대행업) :	재대행금액	백만원
	(측정대행업 등록번호 :)	재대행계약기간	

별지 제13호의2서식 중 평가분야란 다음에 전문분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분야	해당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경력기간	0년0월	0년0월	0년0월

별지 제13호의5서식 앞쪽 중 인적 사항란 다음에 기술자 등급, 평가 분야 및 전문분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기술자 등급, 평가 분야 및 전문분야	기술자등급		평가 분야	전문분야
	인정일	등 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다목 및 마목, 별표 3 제2호마목2) 및 같은 호 바목, 별표 3의2 제2호사목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 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 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 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 어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 ----- ----- ----- -----제2호서식 -----된 야-----.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 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 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 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 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2 호의2서식----- ----- 제출해야-----.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 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영향평가업무) ----- -----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생략)

2.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

오염도의 조사·측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생략)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생략)

<신설>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

1. (현행과 같음)

2.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업무 여유도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
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생략)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
른 생태·자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
등급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 다. (생략)

별표 3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
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
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
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

가. 현황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
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
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
른 생태·자연도, 「환경정책기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 대기질, 수질 등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 다. (현행과 같음)

별표 3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
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음 차수로 한다. <단서 신설>

라. (생략)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 업무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 2)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 .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 차목의 경우 3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에서 제외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재대행 승인 받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이 거짓·부실일 경우에 작성 및 조사 주체 등 책임 소재 및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 업무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 개별기준

마. (생략)

1) (생략)

2)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제58조제1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3의2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제62조의4제1항제7호	인정정지 6개월	인정정지 12개월	인정정지 18개월	인정정지 24개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제58조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별표3의2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제62조의4제1항제7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정지 12개월	인정정지 24개월	인정취소	
2) 평가에 영향을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 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정지 6 개월	정지 12 개월	정지 18 개월	정지 24 개월
--	---------------	----------------	----------------	----------------

별표4 제2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법 조항	행정처분 기준
2.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 제1항 제4호	자격취소
7.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나.(생략)	법 제65조 제1항 제5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6개월

별표4 제2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법 조항	행정처분 기준
2.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 제1항 제5호	자격취소
7.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나.(생략)	법 제65조 제1항 제4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6개월